

발행인 : 서울특별시

편집인 : 공보관

731-6111~3

서울시보

제 1918 호 1995. 8. 25.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 |
|--------|------------------|
| 선 람 | 기 관 의 장 |
| | |

- 입 법 예 고
 - 제 1995-229 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3
 - 제 1995-230 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3
- 고 시
 - 제 1995-242 호 사료성분등록 4
- 공 고
 - 제 1995-228 호 다동구역제 9 지구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7
 - 제 1995-231 호 소방설비공사업면허갱신 7
 - 제 1995-232 호 장교구역제 14 지구재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8
 - 제 1995-233 호 통행제한공고(천호대교) 8
 - 제 1995-235 호 전문경영인모집공고 9
- 훈 령
 - 제 822 호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정 9

<이면계속>

| | | | | | | | | | | |
|---|--|--|--|--|--|--|--|--|--|--|
| 영 | | | | | | | | | | |
| 람 | | | | | | | | | | |

● 공 문 시 행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0

● 구 고 시

- 제 1995- 47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변경인가(서초) 11
- 제 1995- 48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실시계획변경인가(서초) 11
- 제 1995- 55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동) 12
- 제 1995- 28 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시행자변경지정(종로) 12
- 제 1995- 33 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변경지정(도봉) 13
- 제 1995- 56 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성동) 14
- 제 1995- 2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북) 14
- 제 1995- 21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금천) 15
- 제 1995- 54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강남) 15
- 제 1995- 53 호 재건축조합아파트사업계획승인(강남) 15
- 제 1995- 3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중랑) 15
- 제 1995- 39 호 도시계획사업(둔촌동70-25앞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강동) 17

● 구 공 고

- 제 1995-160 호 대형건축물부실방지물위험사용검사전안전진단제도
행정예고(도봉) 18
- 제 1995-150 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송파) 18
- 제 1995-137 호 주거환경개선사업(대림동797일대)환지처분공고(영등포) 19
- 제 1995-281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서초) 19

● 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 1995-88 호 하천점용허가 20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 1995- 7 호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공개 20

● 인 사 발 령

..... 24

● 정 정 게 재

..... 26

입 법 예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29호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8. 25

서울특별시

1. 개정취지

공유수면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징수에 대한 공유수면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산정기준 변경

- 토지가격을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

나. 일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

- 유수의 점용 중 공업용수 인수에 대한 점용료는 14~15년 전인 1980년, 1981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2배로 인상

다. 점용료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 마련

- 기준변경 등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

과 같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라. 면적 및 기간에 대한 산정방법 개선

- 현행 면적 및 기간계산에 있어 반환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1㎡ 미만 면적 및 1월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도록 함.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점용행위를 규제

마.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 현행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동시에 위임한 경우 그 징수금액의 30/100을 해당구에 교부하던 것을 50/100으로 교부율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 9.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참조: 하수행정과장, 750-8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30호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8. 25

서울특별시

1. 개정취지

하천점·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국유재산법의 기준인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하는 등 하천 점·사용료 등 징수에 대한 기준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토지가격을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

나. 공업용수 인수에 따른 점용료산정방법 변경

-현행 펌프관경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점용료산정단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를 적용

다. 일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

-전기사업용수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는 14~15년 전인 1980년, 1981년에 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2배로 인상

라. 점용료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 마련

-기준변경 등으로 전년보다 10% 이상 점용료가 증가한 경우 국유재산법과 같이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마. 점용료 반환근거 조정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관리청이 공의를 위한 감독처분(허가취소 등)을 한 경우에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관리청의 잘못으로 허가량만큼 골채를 채취하지 못한 경우와 재해로 인한 점용료 감면시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함.

바. 면적 및 기간에 대한 산정방법 개선

-현행 면적 및 기간계산에 있어 반올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1㎡ 미만 면적 및 1월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도록 함. 다만, 총 점용면적이 1㎡ 미만,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도록 하여 부분별한 점용행위를 규제

사. 징수교부금 상향조정

-현행 점용허가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들 구청장에게 동시에 위임한 경우 그 징수금액의 30/100을 해당구에 교부하던 것을 50/100으로 교부율을 상향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 9.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새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하수행정과장, 750-86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고시제 1995-242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합 및 단미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같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25

서울특별시장

1. 등록업체명: 대모물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2

| 대표자: 이창우 | | | | | | | | | |
|---|--------|---------------------|----------|----------|----------|-----------|---------|---------|---------|
| 등록사료(1종): 일본에서 수입 | | | | | | | | | |
| 등록번호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사용범위 | 사료의 성분량 | | | | | |
| | | | | 조단백 | 조지방 | 칼슘 | 인 | 조섬유 | 조회분 |
| 서울-854 | 수입배합사료 | 어린개용사료 (BEEF JERKY) | 애견용스낵 | 39.1% 이상 | 15.2% 이상 | 0.557% 이상 | 0.7% 이상 | 0.5% 이상 | 5.2% 이상 |
| 2. 등록업체명: (주)한영당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표자: 장낙필 등록사료(2종):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서 수입 | | | | | | | | | |
| 등록번호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사용범위 | 사료의 성분량 | | | | | |
| | | | | 전화당 | 브릭스도 | 인 | 조섬유 | 조회분 | |
| 서울-855 | 수입단미사료 | 당밀 2 | 배합사료 원료용 | 35.0% 이상 | 65도 | -% 이상 | -% 이하 | -% 이하 | -% 이하 |
| 서울-856 | 수입단미사료 | 당밀 3 | 배합사료 원료용 | 35.0% 이상 | 65도 | -% 이상 | -% 이하 | -% 이하 | -% 이하 |
| 3. 등록업체명: 프레스티지 코리아 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48 대표자: 차선옥 등록사료(5종): 미국, 캐나다에서 수입 | | | | | | | | | |
| 등록번호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사용범위 | 사료의 성분량 | | | | | |
| | | | | 조단백 | 조지방 | 칼슘 | 인 | 조섬유 | 조회분 |
| 서울-857 | 수입배합사료 | 어린개용 4호 사료 | 생후 1~3주 | 1.5% 이상 | 35.0% 이상 | 0.1% 이상 | 0.1% 이상 | 3.7% 이하 | 1.0% 이하 |
| 서울-858 | 수입배합사료 | 어린개용 5호 사료 | 생후 4~8주 | 30.0% 이상 | 20.0% 이상 | 1.2% 이상 | 1.0% 이상 | 3.0% 이하 | 7.0% 이하 |
| 서울-859 | 수입배합사료 | 어린개용 6호 사료 | 생후 8주~1년 | 32.0% 이상 | 18.0% 이상 | 1.2% 이상 | 1.0% 이상 | 3.0% 이하 | 7.5% 이하 |

| 등 록 번 호 | 사료의 종 류 | 사료의 명 칭 | 사 료 의 사 용 범 위 | 사 료 의 성 분 량 | | | | | |
|------------|-------------|---------------|------------------|--------------|--------------|-------------|-------------|-------------|-------------|
| | | | | 조단백 | 조지방 | 칼 슴 | 인 | 조섬유 | 조회분 |
| 서울- 860 | 수입배합 사 료 | 육성개용 1호 사료 | 생후 1년 이상 | 9.0% 이 상 | 4.0% 이 상 | 0.3% 이 상 | 0.3% 이 상 | 2.0% 이 하 | 3.0% 이 하 |
| 서울- 861 | 수입배합 사 료 | 큰개용 1호 사료 | 생후 1년 이상 | 26.0% 이 상 | 14.0% 이 상 | 1.0% 이 상 | 0.8% 이 상 | 5.0% 이 하 | 7.0% 이 하 |

4. 등록업체명 : 한국몽상

대표자 : 염상열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0-7

등록사료(2종) : 프랑스, 일본에서 수입

| 등 록 번 호 | 사료의 종 류 | 사료의 명 칭 | 사 료 의 사 용 범 위 | 사 료 의 성 분 량 | | | | | |
|------------|-------------|---|-------------------------|--------------|--------------|--------------|-------------|-------------|-------------|
| | | | | 조단백 | 조지방 | 칼 슴 | 인 | 조섬유 | 조회분 |
| 서울- 862 | 수입배합 사 료 | 어린개용 2호 사료 (ROYAL CANIN A2) | 생후 3주부 터 8주까지 이유식 | 33.0% 이 상 | 20.0% 이 상 | 1.35% 이 상 | 1.0% 이 상 | 2.0% 이 하 | 6.5% 이 하 |
| 서울- 863 | 수입배합 사 료 | 어린개용 3호 사료 (CHA CHA CHA JERKY SLIM SOFT) | 생후 2개 월령이후 | 30.0% 이 상 | 17.3% 이 상 | 0.79% 이 상 | 0.9% 이 상 | 0.3% 이 하 | 5.7% 이 하 |

5. 등록업체명 : 관서교역상사

74-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대표자 : 차관철

등록사료(1종) : 미국에서 수입

| 등 록 번 호 | 사료의 종 류 | 사료의 명 칭 | 사 료 의 사 용 범 위 | 사 료 의 성 분 량 | | | | | |
|------------|-------------|-----------------------------------|------------------|-------------|--------------|--------------|-------------|-------------|-------------|
| | | | | 조단백 | 조지방 | 칼 슴 | 인 | 조섬유 | 조회분 |
| 서울- 864 | 수입배합 사 료 | 어린개용 1호 사료 (HIGH NUTRI GEL) | 생후 1개월령 이후 | 3.0% 이 상 | 0.03% 이 상 | 0.88% 이 상 | 0.4% 이 상 | 2.0% 이 하 | 8.0% 이 하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28호

다동구역제 9 지구재개발사업

공사완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42호(90. 8. 24)로 시행인가된 다동구역제 9 지구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48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5. 8. 25

서울특별시

1. 사업의 명칭 : 다동구역제 9 지구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51 의 19필지
3. 사업시행인가근거 : 서울특별시고시 제 242호(90. 8. 24)
4.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151, (주)한국산업리스 대표 박만수
5. 완료내역

가. 토 지

- 시행면적 : 2,319.7㎡
- 대지면적 : 1,589.1㎡
- 공공시설면적 : 730.6㎡

나. 건 물

- 건축면적 : 636.97㎡
(건축율 : 39.99%)
- 연면적 : 15,113.09㎡
(용적률 : 478.49%)
- 층수 : 지상 12층, 지하 6층
- 주용도 : 업무시설
(부속용도 : 근린생활시설)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31호

소방설비공사업면허갱신공고

소방법 제52조·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면허 갱신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995. 8. 25

서울특별시

| 면허번호 (연월일) | 상 호 | 영업소재지 | 대표자 | 면허업종 | 95·96년도 도급 한도액 |
|-------------------------|---------------|---------------------|-----|------------------------------|--|
| 제87-2-2호 (95. 8. 18) | (주)피엠씨 코리아 | 강남구 삼성동 41-21 | 윤영민 | 1급소방시설 공사업(기계분야) | 936,080,000원 |
| 제87-4-3호 (95. 8. 18) | 이화소방설비 | 구로구 구로본 동 597-5 | 이종환 | 소방시설공사업 1·2종 (기계·전기분야) | 1종 260,597,000원 2종 763,708,000원 |
| 제87-6-4호 (95. 8. 18) | 동하전기 주식회사 | 영등포구 당산 동2가 11-6 | 윤중사 | 1급소방시설 공사업(전기분야) | 348,827,000원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32호

장교구역제 14지구재개발사업시행

변경인가를위한공람광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4호(76. 8. 25)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되고 같은 고시 제1994-38호(94. 12. 18)로 변경인가된 장교구역제 14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천수기업(주) 대표 김운으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공고일로부터 3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변경인가 신청된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995. 8. 25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명칭 : 장교구역제 14지구 재개발사업
- 2) 시행구역 : 중구 수표동 47-6 외 5필지
- 3) 시행면적 : 1,274.6㎡
- 4) 시행기간 : 76. 8. 25~95. 6. 30
- 5) 시행자 : 중구 수표동 47-6 천수기업(주) 대표 김운
-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중구 수표동 47-6

나. 변경인가 신청내용

| 구분 | 기정 | 변경 | 비고 |
|------|---------------------|---------------------|----|
| 시행기간 | 76. 8. 25~95. 6. 30 | 76. 8. 25~96. 6. 30 | |

※ 변경사유 : 공공용지 기부채납에 따른 기간 추가소요 등
 다. 공람기간 : 95. 8. 19~95. 9. 17
 라.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재개발과(전화 731-6357)

도로법 제5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차량통행제한하고자 같은법 제 53조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995. 8. 25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33호

통행제한광고

| 도로의 종류 | 국도 | 교량명 | 천호대교 |
|--------|--|-----|--------------------|
| 제한의 대상 | 중중량 13톤 초과차량 | 구간 | 교량 본선 전구간 및 진출입 램프 |
| 기간 | 1995년 8월 21일 00:00부터 1995년 9월 4일 06:00까지 | | |
| 이유 | 동 교량의 보수공사에 따른 가설교량 안전성 확보 | | |
| 기타 | | | |

(위치지도)

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1995-235호

전문경영인모집공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에 전문경영인을 도십니다.

1995. 8. 25

서울특별시

1. 채용직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2. 채용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가. 서류심사: 자격기준, 경력 등

나.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한 분에 대하여 개별 동지 후 실시

3. 응시자격

가. 유통관련분야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나.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자기관·출연기관의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농수산 관련분야에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마. 대기업에서 전무 이상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경영인

바. 기타 임용권자가 가항 내지 마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분

사. 위 각항 공히 국가관 및 책임감이 투철하고 지휘통솔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4. 제출서류

가. 자기소개서 1부(학력·경력과 전근무지 연구·업무실적은 반드시 기재, 명함판사진 4대)

나. 경력증명서 1부

다. 자격증 및 학위증명서(박사, 석사) 사

본 각 1부

라.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5. 접수기간: 95. 8. 23~95. 9. 6(14일간 09:00~18:00) (공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마감일 당일 소인본 유효)

6.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부자관리담당관(우편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

7.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채용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을 등록·공개하여야 합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부자관리담당관((02)731-654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훈 령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1995. 8. 25

서울특별시장 조 순 ㉑

●서울특별시훈령제 822호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 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 39조에 의한 부시장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무분장) 부시장의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행정 1부시장

- 가. 기획관리실·감사실·내무국·재무국·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산업경제국·문화관광국·민방위국·소방본부·청소사업본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사항

나. 부시장업무 중 다른 부시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행정 2부시장

가. 도시계획국·주택국·도로국·교통국·하수국·상수도사업본부·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사항

3. 정부부시장

가. 전담사항

(1) 공보관소관 업무

(2)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사항

나. 협의사항

(1) 시정 주요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2) 정책수립과 관련된 시산하 연구기관의 중요정책

(3) 예산·재정운용관련 주요시책

(4) 주요기구 조정

(5) 국제관계(의견)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지시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 및 본부에 대한 부시장의 업무분장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행정1·행정2 및 정부부시장의 분장사무를 정함(제 2조).

공 문 시 행

문서번호 : 예산 41621-1410

시행일자 : 1995. 8. 25

제 목 : 물품관리전환소요조회

1.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관하여 시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물품소요를 조회하오니 필요한 기관에서는 95. 9. 5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일까지 요청이 없을 시에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995. 8. 25
서울특별시 장

물품 관리전환 대상품목 조사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장부가액 (단위: 천원) | 취득일 | 상 태 | 보관 부서 |
|--------------|----------------|--------------------|--------|--------|---------------------|------------|---------------|---------------|
| 7110-003 | 컴퓨터 책상 | 1200×740 ×700mm | 각 | 5 | 330 | 90. 7. 4 | 양 호 | 예산 담당 관 |
| 7430-003 | 한영겸용 전자타자기 | GTS 6600 | 대 | 1 | 400 | 90. 12. 17 | 수 리 후 사용가능 | |
| 7430-003 | " | GTS 7500 | 대 | 1 | 590 | 91. 12. 28 | " | |
| 7440-204 |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 금성 PRT 3850N | 대 | 7 | 4,900 | 92. 12. 1 | " | |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장부가격 (단위: 천원) | 취 득 일 | 상 태 | 보 관 부서 |
|--------------|-----------------|------------------|--------|--------|---------------------|-----------|---------------|---------------|
| 7440-204 | 개인용 컴퓨터 (XT) | OMN1 6600 | 대 | 2 | 1,060 | 90. 3. 4 | 수 리 후 사용가능 | 예산 담당 관 |
| 7440-300 | " | OMN1 7700 | 대 | 1 | 4,430 | 92. 12. 1 | 사용가능 | |
| " | " | OP-COM -XT II | 대 | 3 | 2,550 | 90. 6. 26 | 수 리 후 사용가능 | |
| 7440-300 | " | TG 88II- KAA | 대 | 1 | 2,823 | 87. 3. 25 | " | |

구 고 시

●서초구고시제 1995-47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25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서초구 내곡동 산 13-1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정부기관의 공용의 청사

다. 사업의 규모

- 1) 대지면적(변경 없음): 577,369㎡
- 2) 건축규모 { 당초: 171,571㎡
 변경: 173,533㎡

라. 사업기간

- [당초: 1991. 5. 11~1995. 12. 30
- [변경: 1991. 5. 11~1996. 12. 30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조서와 같음.

바. 설계도서: 서초구 도시정비과에 비치도서와 같음.

●서초구고시제 1995-48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사업(공용의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25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없음): 서초구 방배동 637-2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도시
계획사업(공용의 청사: 서울교원연수원)

다. 사업의 규모

1) 대지면적

-당초 : 55,142.00㎡

-변경 : 55,175.30㎡(중 33.30㎡)

2) 건축면적

-당초 : 8,037.25㎡

-변경 : 10,361.70㎡(중 2,324.45㎡)

3) 건축연면적

-당초 : 15,600.00㎡

-변경 : 37,043.19㎡(중 21,443.19㎡)

라. 사업기간

-당초 : 1988. 6~1995. 12. 31

-변경 : 1988. 6~1997. 12. 31

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조서, 지
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시: 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조서와 같음.

바. 설계도서: 서초구 도시정비과에 비치
도서와 같음.

●성동구고시제 1995-55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

1995. 8. 25

성 동 구 청 장

1. 고시내용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 경 내 용 |
|---------|-----------------------|-----------------------|--------------------|
|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 · 쿼 동 | 없 음 |
| 사 업 주 체 | 평창산업(주), 이순남 | " | " |
| 사 업 위 치 | 성수1가 656-550 의 3필지 | 성수1가 656-550 의 4필지 | 대지분할에 따른 필지수 증가 |
| 대 지 면 적 | 2,899.37㎡(97.59㎡) | 2,869.0㎡(130.0㎡) | 기부채납()증가 |
| 건 축 면 적 | 763.75㎡ | 845.59㎡ | 건축면적 증가 |
| 연 면 적 | 10,117.16㎡ | 11,878.52㎡ | 연면적 증가 |
| 건 폐 율 | 26.34% | 29.47% | 건폐율 증가 |
| 용 적 륜 | 211.10% | 274.07% | 용적률 증가 |
| 세 대 수 | 70세대 | 92세대 | 세대수 증가 |
| 사업시행기간 | 95. 1.~97. 3. | 95. 1.~97. 4. | 공기증가 |
| 사 업 비 | 9,813,196천원 | 10,474,664천원 | 사업비 증액 |
| 비 고 | | | |

●종로구고시제 1995-28호
도시계획사업(공용의 청사건립)
사업시행자변경지정

1. 서울특별시 종로구고시 제1995-22호
(95. 6. 30)로 지정된 도시계획사업(공용
의 청사) 사업시행자를 도시계획법 제23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5. 8. 25

종로구청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종로구 창성동 67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공용의 청사 (대통령경호실 부속청사) 건립

다.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12,597 m² (건축연면적 : 21,858 m²)
- 규모 : 청사 1동(지상 3층, 지하 3층), 경비실 1동(지상 1층)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당초 : 종로구 세종로 1 대통령경호실장

종로구 내자동 201-11호 서울지방경찰청장

- 변경 : 종로구 내자동 201-11호 서울

지방경찰청장

마.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 95. 7. 8

●도봉구고시제 1995-33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변경(확대)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189호(95. 6.

24)로 도시계획시설(시장)이 변경(확대)결정되고 서울시 도봉구고시 제1995-145호(95. 7. 12)로 지적 승인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된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변경(확대) 지정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 및 동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를 변경(확대) 지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3조제

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5. 8. 25

도봉구청장

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변경(확대) 지정내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사업시행지 | 도봉구 창동 1-11 | 도봉구 창동 1-10, 11, 15 |
| 사업의 종류 의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 (농수산물공판장) 명칭 : 농협창동농산물공판장 | 종류 : 도시계획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명칭 : 창동농산물도매시장 |
| 시행지 면적 | 17,160.4m ² | 34,019m ² |
| 시행자 성명 및 주 소 |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원철희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 ○ 서울특별시장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

나. 지정조건 : 본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함.

●성동구고시제1995-56호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말소 처분을 하고 동법시행령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25
 성 동 구 청 장

○ 행정처분 현황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일자 | 사유 | 근거법령 |
|---------|----------|-----|--------------|---------|-------------------------|-------------|
| 84-04-1 | (주) 대호건영 | 전명옥 | 하왕십리동 946-15 | 95.8.17 | 등록기준 미달 무단전출 청문불응 |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

●강북구고시제1995-23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25
 강 북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강북구 변동 191 변동기산제1

주택조합 의 3개주택조합 조합장 김재철 및 (주)기산 대표이사 이산행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가. 위치: 강북구 변동 187-1 의 33필지
 나. 대지면적: 7,271.35㎡
 다. 규모: 지하1층, 지상21층 아파트 1동 185세대, 지하1층, 지상20층 아파트 1동 78세대
 계 26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28,945.34㎡)

4. 공급방법

| 구분 | 주택조합 | (주)기산 | 총 263세대 중 (주)기산지분 79세대는 일반분양 |
|---------------|---------|--------|------------------------------|
| ○ 전용면적 84.94㎡ | 72 세대 | 2 세대 | |
| ○ 전용면적 76.08㎡ | 20 세대 | 11 세대 | |
| ○ 전용면적 59.94㎡ | 92 세대 | 66 세대 | |
| | 계 184세대 | 계 79세대 | |

5. 사업시행기간: 95. 8.~97. 12. 31
 6. 기타의제사항: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법 제15조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금천구고시제1995-21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
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5. 8. 25

금 천 구 청 장

1. 사업명: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의 성명: 주소
가. 상호: 가리봉 재건축조합(조합장: 유방언)
나.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4-28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234-27, 28, 39(3필지)
나. 대지면적: 5,018.90㎡
다. 건축연면적: 27,868.08㎡
라. 사업규모: 지하 2층, 지상 10~19층, 아파트 2개동, 21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5. 8~1997. 12

●강남구고시제1995-5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강남구 역삼동 716상 주택건설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25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승인내역
가. 사업명: 민영아파트 사업계획승인
나. 사업주체: 선릉 1, 2, 3지역 주택조합
다. 사업시행위치: 강남구 역삼동 716
라. 대지면적: 5,316.60㎡

- 마. 사업규모: 아파트-지하2층 지상21층 1동, 206세대 부대복리시설
- 바. 건축연면적: 25,649.01㎡
- 사. 사업기간: 95. 8~98. 9
2. 도면: 별첨과 같음(생략).
3. 기타: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 비쳐 보관

●강남구고시제1995-53호

재건축조합아파트사업계획승인

강남구 청담동 33-의 1필지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25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승인내역
가. 사업명: 재건축조합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나. 사업주체: 순천향아파트 재건축조합
다. 사업시행위치: 강남구 청담동 33-의 1필지
라. 대지면적: 4,475.0㎡
마. 사업규모: 아파트-지하2층 지상19층 1동 158세대
바. 건축연면적: 21,597.79㎡
사. 사업기간: 95. 8~97. 10
2. 도면: 별첨과 같음(생략).
3. 기타: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주택과 비쳐 보관

●중랑구고시제1995-37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시설계획
인가고시

1. 서울특별시 중랑구공고 제1995-155호

(95. 8. 2)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공람공고된 "망우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였기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건설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25
중랑구청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60-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망우역 진입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폭 40m, 연장 75m

4)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5) 사업착수·준공예정 연월일: 인가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조서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지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조서

토 지 조 서

토지소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 일련 번호 | 지번 | 지목 | 면적 (㎡) | 편입 면적 (㎡) | 실제이용 상 황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 비 고 |
|----------|-------|----|-----------|-----------------|-------------|-------|-----|-------|-----|-------------------------|--------|
| | | | | |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 |
| 1 | 160-2 | 도로 | 10,671.9 | 2,614 | 도 로 | 서울특별시 | | | | | |

물 건 조 서

물건소재: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 일련 번호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 실제이용 상 황 | 소 유 자 | | 관 계 인 | |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 비 고 |
|----------|-------|-----------|---------------|-----------|-------------|-----------------|------------------|-------|-----|-------------------------|--------|
| | | | | | | 성명 | 주 소 | 성명 | 주 소 | | |
| 1 | 160-2 | 건물 | 슬레이트 블록 | 16 | 창 고 | 강원 산업 (주) | 중랑구 신문로2가 6 | | | | |
| 2 | 160-2 | 담장 | 블록 | 58 | 담 장 | 강원 산업 (주) | 중랑구 신문로2가 6 | | | | |
| 3 | 160-2 | 목재 | | 15.8 | 목재 적치 | 김형극 | 중랑구 망우동 493-6 | | | | |

●강동구고시제 1995-39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1. 강동구공고 제1994-145호(94. 10. 20)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공람공고하였고, 강동구고시 제1994-95호(94. 11. 15)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인가고시하였던바,
2. 도시계획사항이 강동구고시 제1995-27호(95. 5. 18)로 시설변경결정되고, 강동구고시 제1995-31호(95. 6. 7)로 지적승인되어,
3.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26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강동구청 건설관리과 및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480-1400-

1407).

1995. 8. 25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강동구 둔촌동 70-25 앞
나. 사업명: 둔촌동 70-25 앞 도로개설 공사

다. 사업규모
도로개설 폭 6~10m·연장 20m

라.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인가 일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소재지, 지번·지목,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함

사. 토지 또는 물건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함

토 지 조 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 일련 번호 | 소재지 지 번 | 지 목 (물건의 종류) | 지 적 (구조및 규격) | 면적 (㎡) (수량) | 실제이 용상황 | 소 유 자 | | 비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70-135 | 담 | 1 | 1 | | 강동구 강동구 성내동 540 | | |
| 2 | 70-136 | 대 | 70 | 70 | | 임덕기 강동구 둔촌동 70-25 (김영자 송파구 오금동 127-13(소유권이 전 청구권가등기))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구 성내동 540 압류(제일 2977)) (한국주택은행(남대문지점) 중구 대평로1 가 61-1 공담건물 70-25(근저당권 설 정)) | | 세 무 관리과 |

구 공 고

●도봉구공고제1995-160호

대형건축물의부실방지를위한사용검사전 안전진단제도행정예고

대형 건축물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착공시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32조의2에 규정된 안전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안전진단을 받도록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합니다.

1995. 8. 25

도 봉 구 청 장

- 1. 업무명: 대형 건축물의 부실방지를 위한 사용검사전 구조안전진단의 제도화
- 2. 목적: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적 안전진단을 착공시부터 실시하게 하여 구조문제로 인한 안전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건축물에 표지판을 설치하게 함으로서 책임시공, 책임감리, 권위 있는 안전진단 기관으로 유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대상건축물: 10층 이상으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

축물(건축법 제26조2항)

- 실시방법: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시(건축허가 신청시) 구조 안전진단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용검사 신청시 구조안전진단서를 첨부 제출
- 시공자, 감리자, 구조안전진단기관의 표지판을 작성 건물에 부착의무화

4. 의견제출

대형 건축물 부실방지를 위한 사용검사전 구조안전진단 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5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도봉구청장(주택과장, 901-5380-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대형 건축물 부실방지를 위한 사용검사전 구조안전진단 방안에 대한 의견서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의 대표자) 및 주소, 전화번호

●송파구공고제1995-150호

연차별집행계획수립

- 1. 도시계획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우리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기 공고합니다.
- 2. 관계도서는 송파구 도시정비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냅니다.

1995. 8. 25

송 파 구 청 장

※ 연차별 집행계획 조서

| 일련번호 | 사업의종류 | 명칭 | 위치 | 면적 또는 규모 | 시행기간 | 비고 |
|------|-------|-----------------|------------|-------------------------|---------------------|----|
| 1 | 도로개설 | 거여동 234-61 도로개설 | 거여동 234-61 | B=8m L=22m (176㎡) | 96. 3 97. 12. 31 | |

| 일련 번호 | 사업의 종 류 | 명 칭 | 위 치 | 면적 또는 규 모 | 시행기간 | 비 고 |
|----------|------------|----------------------------|---------------------------|-----------------------------|--------------------------|-----|
| 2 | 도로개설 | 거여동 178-91~ 173-4간 도로개설 | 거여동 178-91~ 거여동 173-4간 | B=10m L=145m (1,450㎡) | 96. 3 ~ 97. 12. 31 | |
| 3 | 도로개설 | 종남동 197~ 199-3간 도로개설 | 종남동 197~ 종남동 199-3 간 | B=8m L=160m (1,280㎡) | 96. 3 ~ 97. 12. 31 | |
| 4 | 학교설립 | 가칭 거원국 | 송파 거여동 303 | 11,009㎡ | 96. 3~12 | |
| 5 | 학교설립 | 가칭 거여중 | 송파 거여동 290 | 12,000㎡ | 96. 3~12 | |

●영등포구공고제1995-137호

주거환경개선사업환지처분공고

1. 건설부고시 제936호(90. 12. 8)로 지구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92-83호(92. 3. 17)로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영등포구고시 제92-25호(92. 12. 22)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영등포구 대림3-1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하여
2. 환지확정처분을 완료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1조에 의해 환지처분공고합니다.
3.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주택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5. 8. 25

영 등 포 구 청 장

가. 사업의 명칭: 대림3-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나. 시행구역 및 면적

- 시행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797 일대
- 면적: 6,425.9㎡

다. 사업시행자: 영등포구청장

라. 환지확정처분 내역: 마로불임(생략).

●서초구공고제1995-281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5. 8. 25

서 초 구 청 장

| 인가일자 |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 양 도 자 | | | 양 수 자 | | |
|-----------|----------------|------------|------------|-----|---------|-------------|-----|
| | | 상 호 | 소재지 | 대표자 | 상 호 | 소재지 | 대표자 |
| 95. 8. 14 | 설비 92-서울-12-32 | (주)창진엔지니어링 | 서초동 1556-9 | 이교순 | 세울공영(주) | 서초동 1303-13 | 안태용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한강관리사업소고시 </div> <p>●한강관리사업소고시 제1995-88호 하천점용허가</p> | <p>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 8. 25 한강관리사업소장</p> |
|--|--|

| 허가연월일 | 점 용 위 치 | 지목 | 점용면적 (㎡)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허 가 받 은 자 | |
|-----------|------------------------|----|-------------|-------|-------------------------|---------------------------|-------------------|
| | | | | | | 주 소 | 성 명 |
| 95. 8. 11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04-6 | 하천 | 180 | 전기 설치 | 95. 8. 11~ 96. 4. 24 | 관악구 봉천동 1687-22(해양빌딩·201) | 한국해양소년단 서울연맹장 박종욱 |

|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div> <p>●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고제1995-7호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공개</p> | <p>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및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5. 8. 25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p> |
|---|---|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

| ① 소속 | 서울특별시 | | ② 직위 | 시 장 | ③ 성명 | 조 순 |
|----------|----------|---------------------------------------|------|-----------|-------|-----|
| ④ 본인의 관계 | ⑤ 재산의 종류 |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 ⑦ 가액 (천원) | ⑧ 비 고 | |
| 본 인 | 대 지 |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88-39 257㎡ | | 282,700 | | |
| | " | 전남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340-1 526㎡ 중 1/15지분 | | 66 | | |
| | 전 |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387-2 821㎡ | | 43,102 | | |
| | " | " 387-6 | | 18,965 | | |

| ④ 본인과의 관계 | ⑤ 재산의 종류 |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⑦ 가액 (천원) | ⑧ 비 고 |
|--------------|-------------|---------------------------------|--------------|-------|
| 본 인 | 전 | 433㎡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역북리 438-4 | 138,060 | |
| | | 354㎡ 강원도 강릉시 흥계동 827 | 17,742 | 문중재산 |
| | | 1,491㎡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473-1 | 14,720 | |
| | | 846㎡ " " 473-2 | 26,986 | |
| | | 4,304㎡ " " 472 | 6,230 | |
| | | 387㎡ " " 844-1 | 39,885 | |
| | | 4,906㎡ " " 519-8 | 484 | 문중재산 |
| | | 101㎡ " " 519-13 | 192 | " |
| | | 40㎡ 강원도 강릉시 청산면 산북리 320-1 | 2,613 | " |
| | | 975㎡ " " 320-2 | 1,111 | " |
| | 임 야 | 426㎡ 강원도 강릉시 교동 754-1 | 74,160 | " |
| | | 3,708㎡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산 76 | 7,983 | " |
| | | 6,942㎡ " " 산 85 | 15,233 | " |
| | | 11,901㎡ " " 776 | 255 | " |
| | | 198㎡ " " 산 193 | 253 | " |
| | | 198㎡ " " 779-6 | 2,978 | " |
| | | 1,742㎡ 강원도 강릉시 청산면 산북리 산 50 | 119 | " |
| | | 397㎡ " " 산 42 | 5,355 | " |
| | | 17,851㎡ " " 산 51 | 178 | " |

| ④ 본인과의 관 계 | ⑤ 재산의 종 류 |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⑦ 가액 (천원) | ⑧ 비 고 |
|---------------|--------------|--|--|------------------------------------|
| 본 인 | 임 야 | 595㎡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산 160-1 4,562㎡ " " " 산 160-3 496㎡ " " " 산 160-5 4,364㎡ " " " 산 160-6 1,190㎡ " " " 산 173-1 2,083㎡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산 179 7,934㎡ | 5,018 332 5,542 1,368 2,791 4,601 | 문중재산 " " " " " " |
| | 전 물 |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88-25 건물면적 231㎡ 대지 336㎡ | 343,924 | |
| | 전 세 권 | 서초구 서초동 1577 금성빌딩 403호 (51명형) | 112,200 | 사 무 실 |
| 본 인 | 예 금 | 한일은행 주택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보험 | 165,917 21,700 30,487 108,899 15,000 | |
| 본 인 | 자 동 차 | 95년식 그랜저 LX3D 2972cc 서울 3포 3666 | | |
| 본 인 | 저 작 권 | 경제원론 (ISBN 89-18-10010-8) 74. 4. 20 초판 90. 3. 1부터 정운한교수와 공저 | | |
| (소 계) | | | 1,517,149 | |
| 배 우 자 | 예 금 | 한일은행 상업은행 삼성생명보험 하나은행 보람은행 | 34,474 86,561 44,988 21,207 63,379 | |
| (소 계) | | | 250,609 | |

| ④ 본인과의 관계 | ⑤ 재산의 종류 |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⑦ 가액 (천원) | ⑧ 비 고 |
|-----------|----------|-----------------|-----------|-------|
| 장 남 | | | | 고지거부 |
| 장남의배우자 | | | | " |
| 손 녀 | | | | " |
| 손 자 | | | | " |
| 차 남 | | | | " |
| 차남의배우자 | | | | " |
| 손 녀 | | | | " |
| " | | | | " |
| 손 자 | | | | " |
| 삼 남 | | | | " |
| 삼남의배우자 | | | | " |
| 손 자 | | | | " |
| " | | | | " |
| 사 남 | | | | " |
| (총 계) | | | 1,767,758 | |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퇴직자)

| ① 소속 | 서울특별시 | ② 직위 | 시 장 | ③ 성명 | 최병철 |
|------|-------|------|-----|------|-----|
|------|-------|------|-----|------|-----|

| ④ 본인과의 관계 | ⑤ 재산의 종류 | ⑥ 소재지·면적 등 권리명세 | ⑦ 가액 | ⑧ 변동사유 |
|-----------|----------|-------------------------------------|----------------|--------|
| 본 인 | 예 금 | 보람은행(10,967) 예금감소 삼성생명(738) 예금증가 | △10,967 738 | 생활비 사용 |
| (소 계) | | | △10,229 | |

| ④ 본인과의 관계 | ⑤ 재산의 종류 | ⑥ 소재지·전적 등 권리명세 | ⑦ 가액 | ⑧ 변동사유 |
|-----------|----------|--|----------------------|-----------------------------|
| 배우자 | 예금 | 국민투자신탁(32,451) 예금감소 서울신탁은행(3,313) 삼성화재해상보험(1,800) 예금증가 | △32,451 5,113 | 생활비 및 세금 종교단체 등 각종현금 |
| (소계) | | | △27,338 | |
| 장남 | 예금 | 외환은행(20,120) 예금감소 외환은행(19,572) 삼성화재해상보험(6,000) 예금증가 | △20,102 25,572 | 예탁계좌이전 예탁계좌이전 및 봉급 저축 |
| (소계) | | | △5,470 | |
| (총계) | | | △32,097 | |

인사발령

1급 직무대리 명령

발령 제451호(1995. 8. 12)
재무국장 이사관 탁병오 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

1급 공무원 승진, 전보

발령 제451호(1995. 8. 12)
청소사업본부장 지방관리관 김동훈 상수
도사업본부장
시의회사무처장 지방관리관 윤두영 청소
사업본부장
내무국장 지방이사관 손장호 지방관리관
에 임함, 공무원교육원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2·3급 전보

발령 제452호(1995. 8. 16)
내무국 지방부이사관 이철수 교통관리사
입소장
새문на회관 지방이사관 이광우 내무국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휴직

발령 제454호(1995. 8. 11)
가양하수처리(사) 지방전기원(10등급)
강문수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휴직을 명함
서울특별시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55호(1995. 8. 14)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조무원(검찰 10등
급) 김교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가양하수처리(사) 지방전기원(10등급)
강민원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

기술직공무원 의원면직

발령 제456호(1995. 8. 14)
상수도사업본부(강남수도사업소) 지방수
도토목서기보 문승광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지방2급 공무원 파견

발령 제457호(1995. 8. 16)
내무국 지방이사관 김명주 시정개발연구
원 파견(95. 8. 16~96. 8. 15)
내무국 지방이사관 박한경 도시철도공사
파견(95. 8. 16~96. 8. 15)
서울특별시장

지방4급 공무원 전임

발령 제458호(1995. 8. 14)
종로구 총무국장 지방서기관 홍기화 서울
특별시 내무국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3급에의 승진 및 직무대리명령

발령 제459호(1995. 8. 16)
내무국 지방서기관 홍기화 지방부이사관
에 임함, 도시철도공사 파견근무를 명함
(95. 8. 16~96. 8. 15)
인사과장 지방서기관 민경태 지방부이사
관에 임함,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에 보함
감사 1담당관 서기관 김홍권 공무원교육
원 교수부장 직무대리를 명함
서울특별시장

법정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60호(1995. 8. 16)
보건환경연구원 지방법정직8급상당(공해
측정기사) 임채국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
함
서울특별시장

법정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60호(1995. 8. 17)
시립서대문병원 지방법정직7급상당(고압
가스관리기사) 김성호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62호(1995. 8. 11)
동부병원 지방위생원(사역 9등급) 전만
순 사망으로 인한 면직
서울특별시장

지방 1급 승진임용

발령 제461호(1995. 8. 16)
시의회사무처 지방이사관 탁병오 지방관
리관에 임함, 시의사무처장에 보함
서울특별시장

공무원 임용

발령(1995. 8.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이사관 심장석 서울
특별시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이사관 정진국 서울
특별시 송파구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보사환경국장 부이사관 권오
호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이사관 조광권 서
울특별시 보사환경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장 부이사관 김우
석 서울특별시 문화관광국장에 보함
서울특별시 감사실장 여사관 이상진 서울
특별시 산업경제국장에 보함
내무부장관

인사발령통지

발령 제463호(1995. 8. 12)
강서구 이사관 도명정 관리관에 임함, 서

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에 보함
1995. 8. 12 대 통 령

기능직공무원 면직

발령 제464호(1995. 8. 18)
농촌지도소 지방운전원시보(10등급) 정
민영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서울특별시장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 취소

발령 제465호(1995. 8. 18)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 지방기계원시보

(10등급) 이근수 95. 8. 18차 신규임용을
신규임용유예 신청에 의하여 동일자로 취소
함

정 정 계 재

95. 8. 5차 제 1914호 서울시보에 게재한
(38-27쪽) 우리 구 연차별집행계획 수립공
고문 중 다음의 내용을 정정공고합니다.

1995. 8. 25

마 포 구 청 장

<정정전>

- 주차장

| 연번 | 사업의 종류 | 명 칭 | 위 치 | 면적(㎡) | 시행기간 | 비 고 |
|----|--------|---------|------------------------------|---------|------|----------------------------|
| 1 | 주차장 | 공공주차장시설 | 성산동 275-44 275-55, 275-56 | 1,168.6 | 2단계 | 성산동 275-56 1132중 469.3㎡ |

<정정후>

- 주차장

| 연번 | 사업의 종류 | 명 칭 | 위 치 | 면적(㎡) | 시행기간 | 비 고 |
|----|--------|---------|------------------------------|---------|------|----------------------------|
| 1 | 주차장 | 공공주차장시설 | 성산동 275-44 275-55, 275-56 | 1,168.6 | 1단계 | 성산동 275-56 1132중 469.3㎡ |